

#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(VI)

-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한 단계적·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자원봉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.
- 특히 연말을 맞이하여 대면 자원봉사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,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의 자원봉사현장 안전관리방침 수립과 이행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함.

## 1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주요내용

### 1) 단계적 완화 내용

- 1차 개편 :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
- 2차 개편 : 대규모 행사 허용
- 3차 개편 : 사적모임 제한 해제

※ 전환시점 : 11월 1일부터 4주(운영) + 2주(평가) 간격으로 전환,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

구분		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행사	접종자 + 미접종자	100명 미만 행사 가능 ※ 결혼식,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		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
	접종자, PCR(-) 등만 참여	500명 미만 행사 가능 (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) ※ 좌석 띄우기, 정원 제한, 취식금지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	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	
사적모임		수도권 10명, 비수도권 12명 (접종자·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, 단, 식당·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)		사적모임 제한 해제

## 2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

-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감염확산 예방
-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(PCR) 확인자를 대상으로 방역 제한조치 해제
- 요양병원·시설, 장애인시설,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면회 등은  
접종자 중심

1차 개편	2~3차 개편
<b>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</b>	<b>100인 이상 행사·집회, (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)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고위험시설)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 등 5종류 시설 (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)</li> <li>· (취약시설) 의료기관(입원), 요양시설 면회, 중증장애인·치매시설, 경로당·노인복지관·문화센터 등 고령·취약층 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결혼식, 박람회, 학술행사, 콘서트, 체육대회, 축제, 집회 등 모든 행사</li> </ul>

※ 참고자료 :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(2021.10.29./관계부처합동)

## 2 자원봉사활동 안전관리 지침

### 1) 기본 방향

- 자원봉사자와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의 회복
- 접종완료자 중심의 대면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, 미접종자인 경우 비대면 활동에 배치하도록 권고
- 비대면 활동으로 이루어지던 자원봉사활동이 대면활동으로 전환시에도 일상적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 확보
- 자원봉사활동시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, 감염취약시설인 경우 미접종자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PCR 검사 후 배치

## 2) 자원봉사활동 현장 안전관리

### ○ 안전한 자원봉사현장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

- 방역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대면활동 시 방역관리 철저
- 행사 또는 현장 활동시 체온 검사 의무화 및 손소독제 비치
- 자원봉사활동현장 방역을 위한 물품 구비(체온측정기, 손소독제 등)
- 간편한 전자 출입 명부 장치, 출입자 명부작성 등
-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

※ 자원봉사활동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며, 봉사활동 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. 단,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

### ○ 집단 방역을 위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

- 자원봉사활동시 현장 방역 관리자 지정
- 센터별 방역 지침 작성 및 정기적 교육 실시
- 자원봉사활동시 방역 안내문 또는 방역 교육 실시
-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는 필수적으로 예방접종 완료
- 미접종자인 경우 자원봉사자 접촉 제한

### ○ 감염 취약시설 봉사활동 시 방역관리 방안마련

- 감염 취약시설 봉사활동시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후 배치
- 취약시설 활동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필요시 비닐 장갑 착용 등 방역 관리 철저

○ 겨울철 실내 활동 방역 관리 철저

- 실내 활동시 관리자들을 정기적인 환기 철저
-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 의무

○ 자원봉사자 급식

- 자원봉사자 급식은 가급적 제한
- 필요에 의해 자원봉사자 급식을 할 경우, 밀집된 장소에서의 급식을 제한하며, 방역 관리 준수(식사시간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등)

○ 개인정보보호 원칙 준수

- 출입자 명부 작성시 개인안심번호 활용 등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
-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준수하여 출입자 명부 관리 철저

○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관리

- 활동 배치시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, 미접종자인 경우 비대면 활동 권고
- 활동기간 중 마스크 착용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방역 관리 철저

○ 자원봉사활동 방역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

- 지역 보건소 담당자 연락망 확보와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구축
- 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와 연락망 확보와 긴급상황시 협력하여 대처